

직권조치결과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0일

고군면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서 *순	서 *순 1928-10-17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12-10